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9.11.14.)

조례 및 일반의안
심 사 보 고 서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
2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3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5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35
7	거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8
8	거창스포츠파크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41
9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44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6
11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	49

의안번호 제2019 - 115호

거창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1. 12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0. 21.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11. 12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가. 제안이유

○ 거창군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을 정함(안 제2조)

가) 매년 수립·시행

나) 추진사항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안 제3조)

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주현]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을 장려하며,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통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 하는 조례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에 따라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지침 및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2019 - 116호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1. 12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0. 21.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11. 12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가.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종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선정(안 제2조·제3조)

2)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운영(안 제4조~제8조)

3)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안 제9조)

4) 대상사업의 점검·관리 및 평가(안 제10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주현]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위임사항에 관하여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과 선정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에서 제8조에서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 안 제9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대상사업의 점검·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실명 공개로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 군 주요 정책 수행 공무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하며, 책임소재의 명확화로 군정 신뢰 증진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거창군 제 호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1. 대상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대상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
2.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상사업의 점검·관리) 군수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거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

① 등록번호	② 정책명	③ 사업부서	④ 담당자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 -1, 20 -2)합니다.

② 정 책 명: 사업명을 적습니다.

③ 사업부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명세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 당 자	(남/여)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00.00.00	입안자, 검토 및 결재자, 감독공무원 등의 직과 성명 기재
○ 내용	'00.00.00	입안자, 검토 및 결재자, 감독공무원 등의 직과 성명 기재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온-나라시스템 상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명을 적습니다.

② 추진배경: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습니다.

③ 사업개요: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적습니다.

④ 사업부서: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을 적습니다.

⑤ 담당자: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적습니다.

⑥ 선정기준: 제2조 각 호 중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⑦ 사업기간: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을 적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그 밖의 주요내용 등을 적습니다.
- 일시 및 관련자는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을 적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 -	담당부서 작성자	(부서명 / 담당명) (이름 / 사무실연락처) (남/여)
정 책 명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추진기간: ○ 총사업비: ○ 주요내용 -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도 붙일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 - 117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1. 12.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0. 21.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11. 12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가. 제안이유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체납액 유무 검토 규정을 삭제하여 교부조건을 완화하고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사용 시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로페이 사용 근거를 마련함

나. 주요내용

1) 위임조례 입안원칙, 위임범위에 맞게 조문 정비

가) 법령 재기재 사항 삭제(안 제4조·제6조)

- 보조대상 사업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재기재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법 제32조의2제6항~제8항 재기재
- 실비보상 :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나) 정비 :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2)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완화함(안 제13조제5호)

가) 삭제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유무 검토

나) 근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남

3) 지방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사용 등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가) 지방보조금 집행 시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의무사용 규정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주현]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체납액 유무 검토 규정을 삭제하여 교부조건을 완화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로페이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법령 재기재 사항을 삭제 하였으며
- 안 제13조제5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유무 검토조항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49조의2에서는 지방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사용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결정기준의 범위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축소되어 검토규정을 완화하고,

* 행정안전부 보조금 관리 기준에 보조금 교부 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는 검토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음

- 보조금 사용 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재수단을 명시해 보조금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제4조·제9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법”을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의3제8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제1호 중 “위배”를 “적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2(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 성질의 경비
2.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삭 제>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군수는「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삭 제>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의3제8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제13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유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삭 제>
<신 설>	제16조2(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 성질의 경비 2.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

의안번호 제2019 - 118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1. 12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0. 21.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11. 12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곽승욱]

가. 제안이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거창 항노화사업,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 도로명 주소사업, 개인지방소득세 독자 신고 등 정부 및 군 시책 추진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함

나. 주요내용

1) 정원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조정(안 제25조)

가) 정원 총수 증28명 : 702명 → 730명

나) 집행기관 정원 증28명 : 688명 → 716명

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4)

가)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증28명

- 현행 : 628명(본청300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1명,
사업소37명, 읍39명, 면140명)
- 조정 : 656명(본청309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8명,
사업소37명, 읍40명, 면151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주현]

본 조례안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25조에서는 정원 총 수 및 집행기관 정원을 28명 증가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 안 별표4에서는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28명 증가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거창 항노화 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 도로명 주소사업,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등 정부 및 군 시책 추진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1.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추계서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702명”을 “7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88명”을 “716명”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02명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 정원: 688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	**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30명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 정원: 716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730 ~~702~~	331 ~~322~~	14	141 ~~134~~	67	74 ~~67~~	41	41 ~~40~~	162 ~~151~~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698 ~~670~~	327 ~~318~~	14	114 ~~107~~	40	74 ~~67~~	40	41 ~~40~~	162 ~~151~~
	4급	3	3							
	4~5급	2	0		1		1		1	
	5급	37	15	3	5	4	1	3	0	11
	6급 이하	656 ~~628~~	309 ~~300~~	11	108 ~~101~~	36	72 ~~65~~	37	40 ~~39~~	151 ~~140~~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5	2		2	2		1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

나. 관련조문 : 제25조(정원 총수)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군비	100	1,232	1,252	1,272	1,292	5,148

3. 관련 의견

국가 및 군정 행정기능 강화에 따라 인력증가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0년 기준)

가. 정원 총수 증원 : 28명

나. 연간 인건비 증가 총액(2020년) : 1,232백만원

기본급 1,120백만원, 수당 등 112백만원

작성자 : 행정과장 곽승욱

의안번호 제2019 - 119호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1. 12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0. 21.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11. 12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곽승욱]

가. 제안이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서비스 추진과 군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른 면 기관 명칭을 변경함

나. 주요내용

1) 면 기관 명칭이 모두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정비함(안 제명·제1조·제2조)

2) 면 기관 명칭 변경함(안 별표)

가) 웅양면사무소 ⇒ 웅양면 행정복지센터

나) 고제면사무소 ⇒ 고제면 행정복지센터

다) 북상면사무소 ⇒ 북상면 행정복지센터
라) 마리면사무소 ⇒ 마리면 행정복지센터
마) 남하면사무소 ⇒ 남하면 행정복지센터
바) 신원면사무소 ⇒ 신원면 행정복지센터
사) 가북면사무소 ⇒ 가북면 행정복지센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주현]

본 조례안은 거창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제명과 면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명,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면 기관 명칭이 모두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 안 별표에서는 면 기관 명칭을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서비스를 추진하고, 군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면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로 한다.

제2조 중 “군·읍·면사무소”를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거창군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 소재지) 군·읍·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2조(사무소 소재지)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별표〕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기 관 명	소 재 지
거창군청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90
주상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655
웅양면 행정복지센터 ~~웅양면 사무소~~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1431
고제면 행정복지센터 ~~고제면 사무소~~	거창군 고제면 입석1길 14
북상면 행정복지센터 ~~북상면 사무소~~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10
위천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24
마리면 행정복지센터 ~~마리면 사무소~~	거창군 마리면 빼재로 18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남상면 인평길 36
남하면 행정복지센터 ~~남하면 사무소~~	거창군 남하면 영서로 41
신원면 행정복지센터 ~~신원면 사무소~~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67
가조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8
가북면 행정복지센터 ~~가북면 사무소~~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17-16

의안번호 제2019 - 122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1. 12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0. 21.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11. 12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가. 제안이유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계획 따라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공성을 갖추고 지역사회 노인복지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대상사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 사업 주요내용

○ 노인맞춤 돌봄 대상자 조사

○ 대상자별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인력(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 채용·관리·운영

○ 서비스 제공

- 직접 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 연계 서비스 : 민간후원자원 지원

3) 위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1년)

4) 수탁자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5) 위탁기관 : 3개 기관

구 분	해 당 권 역	수행기관
1권역	거창읍(대평리, 김천리, 송정리, 장팔리, 정장리)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1개소
2권역	거창읍(대동리, 서변리, 동변리, 학리, 양평리) 주상면, 가조면, 가북면, 웅양면	1개소
3권역	거창읍(상림리, 중앙리, 가지리) 마리면, 위천면, 북상면, 고제면	1개소

6)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보건복지부 심사표에 의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주현]

○ 본 동의안은 현 노인돌봄사업의 개별 사업 추진으로 중복과 누락 등 사업수행의 비효율성과 서비스대상의 돌봄욕구 충족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 6개 사업을 통합하여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2020년부터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운영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안정적·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제2019 - 123호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1. 12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0. 21.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11. 12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가. 제안이유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2019.12.31.) 및 2020년부터 여성가족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위탁대상 :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1길 170

3) 사업내용

○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교육·상담·문화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 가족관계 개선, 부모역할 지원 등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4)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5)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6) 수탁자격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규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비영리 단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주현]

본 동의안은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가족의 유형별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거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위탁사무 및 조건으로

•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교육·상담·문화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 가족관계 개선, 부모역할 지원 등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있으며

○ 검토의견으로는

건강한 가정 유지를 위한 다향한 통합서비스제공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제2019 - 124호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1. 12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0. 21.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11. 12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가. 제안이유

거창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의 민간위탁계약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한 위·수탁계약 절차를 이행코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테니스장을 위탁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대상사무 :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의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2) 시설현황

○ 테니스장

계	테니스장		부대시설		
	인조잔디코트	하드코트	관리사무소	조명시설	펜스시설
12면	6면	6면	1층 140.55㎡	12개	7829㎡

3)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4) 수탁자격 :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

5)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6) 예산지원 : 없음(테니스장 사용료로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주현]

본 동의안은 군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바램의 하나로 각종 스포츠를 즐기고 있으며 그 중 테니스는

대중화되어 많은 군민들이 스포츠파크내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는 있는 실정으로

○ 주요내용은

•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및 부대시설의 관리이며

○ 검토의견으로는

군민여가생활의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테니스장 관리운영은 전문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제2019 - 128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1. 12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0. 21.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11. 12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가. 제안이유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출연개요

○ 근거법령: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대 상: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665,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20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액	2020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20년	665	665	665			665	

◯ 사업내용: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주현]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장학사업의 출연금 지원으로

○ 주요내용은

•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등이 있으며

○ 검토의견으로는

거창군의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거창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출연금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제2019 - 12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1. 12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0. 21.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11. 12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강국희]

가. 제안이유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 수행을 지원함.

나. 주요내용(출연개요)

1)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2) 대 상: 한국지방세연구원(대표 공석)
3) 사 업 비: 4,038천원

- 2020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천원)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액	2020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2020년	4,012	4,038	4,038			4,038	

4) 사업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 조사 · 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주현]

본 출연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 조사 · 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등으로

○ 검토의견으로는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 · 의결하고, 수입 · 지출 결산은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어 연구원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 시스템 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제2019 - 130호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1. 12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0. 21.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11. 12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가. 제안이유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차질 없는 문화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출연개요)

1) 근거법령 : 「지역출자·출연법」 제20조,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2) 대 상 : 거창문화재단(이사장 구인모)

3) 사 업 비 : 691,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20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액	2020액*	재원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20년	906	691	691	-	-	691	-

4) 사업내용

- 문화재단 사무국 인건비(직원 4명, 기간제 2명) 지원
- 문화재단 사무국 경상경비(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주현]

본 출연안은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2017년 설립이후 운영 4년차에 접어드는 거창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문화재단 사무국 인건비(직원 4명, 기간제 2명) 지원과
- 문화재단 사무국 경상경비(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지원의 내용으로

○ 검토의견으로는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및 한마당대축제 기획·운영 업무를 비롯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들의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거창문화센터 관리 등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